

민원내역 상세

홈 > MY > 민원내역 상세

[공개] 오피스텔 가구 방염 여부

첨부파일

민원상담내용

작성자	김동준	작성일	2020-07-26
이메일	8848dj@naver.com	민원발생지역	쌍촌동
상담내용	<p>본 민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서 발생한 민원입니다.</p> <p>안녕하십니까? 쌍촌동에 11층이상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중인 현장에 가구공사를 하고자 하는 업체입니다.</p> <p>오피스텔 내부 마감자재 검토중에 방염처리 대상품목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.</p> <p>'[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]의 제20조 2항에 가구류(옷장, 찬장, 식탁, 식탁용의자, 사무용 책상,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)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동림대 등과 [건축법]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.'로 되어있는데, 오피스텔 세대내부의 가구류(신발장, 침실불박이장, 주방가구)는 방염대상물에서 제외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.</p>		
처리통보방식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휴대전화(SMS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홈페이지		

처리기관

처리기관	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	담당자	조영진
연락처	062-613-8543	처리에정일	2020-07-28
처리상황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 margin-right: 5px;">접수</div> >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 margin-right: 5px;">분배(담당자지정)</div> >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 margin-right: 5px;">답변처리중</div> >> 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orange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답변완료</div>		

처리내용

처리 경과일	1일 20시간 27분 30초
처리결과	<p>1. 먼저 소방행정업무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.</p> <p>2.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1) 층수가 11층 이상인 복합건축물은 층별 용도와 관계없이 전 층이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됩니다.</p> <p>2)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관련 가구류(옷장, 찬장, 식탁, 식탁용 의자, 사무용 책상, 사무용 의자,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동림대 등과 「건축법」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. 고 되어있습니다.</p> <p>3) 위 법령에 따라 오피스텔 세대내 가구류(신발장, 침실불박이장, 주방가구) 등은 방염대상물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다만, 가구류를 제외한 연장 부분, 창호를 제외한 아트월 등 연결된 부분은 방염 대상물품에 해당 될수 있습니다.</p> <p>4)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,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조영진(☎ 613-8543)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</p>

첨부파일